

수 의 사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

2020. 6.

농 립 축 산 식 품 부
(방역정책과)

1. 개정 이유

수의사법 개정('20.2.11.)으로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이 신설되어 과징금 징수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○ 과징금의 징수 절차 신설(안 제30조)

- 과징금의 징수 절차는 「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」을 준용하고, 납입 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을 기재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6. 10.~ 7. 2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0조(과징금의 징수 절차)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「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」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 설>	제30조(과징금의 징수 절차)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「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」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2523